

광주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가단51927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환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담, 담당변호사 임현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재천

변론 종결2023. 6. 9.

판결 선고2023. 7. 14.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21년 제142호 공정증서에 기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88,230,7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가. 피고는 원고에게 74,420,5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이 판결 확정일에 의료법인 E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88,230,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2013. 6. 10.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501587호 양수금 사건에서 'C은 F에 90,301,949원 및 그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09. 2. 7.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3. 6. 25. 확정되었다.

2) F의 승계인인 주식회사 G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위 승계집행문은 2015. 2. 26. C에게 송달되었다. F의 승계인인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위 승계집행문은 2020. 3. 5. C에게 송달되었다.

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가 법무법인 D는 2021. 4. 5. C과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21년 제14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이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① 피고는 2021. 3. 24. C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 ② 2021. 4. 12.까지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 ③ C이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 ④ C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다. 피고의 강제집행

1) 피고는 2021. 4. 16.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타채12805호로 'C이 제3채무자인 의료법인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여(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에서 압류금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피고의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및 C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이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하 '이 사건 임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20,507,20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21. 4. 20.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21. 4. 23. E에, 2021. 5. 3. C에게 각 송달되어 2021. 5. 11.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2021. 5. 4.경부터 2022. 8. 5.경까지 E으로부터 C의 임금 중 74,420,520원을 지급받았다(피고는 E으로부터 74,420,5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는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라. C의 무자력

C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E에 대한 임금채권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H은행의 2022. 12. 29.자 회신결과,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의 2023. 1. 9.자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어 압류·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와 아울러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때와 같이, 실질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는 상태가 초래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참조).

또한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388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은, 피고로 하여금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E에 대한 이 사건 임금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어 압류·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여, 그 실질에 있어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양도해 준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그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C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E에 대한 이 사건 임금채권은 당시 C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변제기한(2021. 4. 12.)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일(2021. 4. 5.)로부터 1주일 후이고, 피고는 위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보름도 채 지나지 않은 2021. 4. 16.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21. 4. 20.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위 전부명령에 기하여 2021. 5. 4.경부터 2022. 8. 5.경까지 E으로부터 합계 74,420,520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도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채무자인 C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피고는 C의 친형으로서 C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H은행의 2022. 12. 29.자 회신결과,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의 2023. 1. 9.자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전부된 이 사건 임금채권액이 88,230,780원인 사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90,301,949원을 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88,230,7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채무부담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전부채권의 양도 및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전부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가 전부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아 그 부분 전부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전부된 이 사건 임금채권액이 88,230,780원이고, 전부채권자인 피고가 제3채무자인 E으로부터 74,420,52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앞서 본 사해행위 취소 금액 범위 내로서 이미 지급받은 74,420,5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변제받지 못한 금원(13,810,260원)과 관련하여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며, 위 채권의 채무자인

E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는 가액배상의 범위는 C의 모든 채권자에 대한 전체 채무액 중 원고의 채권이 차지하는 비율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 8706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제송

별지